9AB9A349B384429AAA1C5CFF26B21D92

공정거래위원회

보도참고자료

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0월 14일(목) 배포

2021년 10월 14일(목) 10:00부터 보도가능

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

담당과장: 이준헌(044-200-4948)

담당: 이영희 사무관(044-200-4949)

「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」 개정(안) 행정예고

-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 조정,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50% 감액사유 합리화 등을 통한 과징금부과 기준 보완 -

■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는 「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(이하 '과징금 고시')」 개정안을 마련*하여 **2021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** 20일간 **행정예고**한다.

*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유통·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사전의견수렴을 거쳐 마련

■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·시행할 계획이다.

1 개정 내용

가.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 조정

9AB9A349B384429AAA1C5CFF26B21D92

□ **(현황)** 과징금 고시상 **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구간별 상한**이 **공정거래법,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 보다 낮아** 위원회 소관 법령간 **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**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.

< 정액과징금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금액 (현행) >

중대성의 정도	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	부과기준금액	
		공정거래법, 가맹법 등	대규모유통업법
매우 중대한 위반행위	2.2이상	4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	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
중대한 위반행위	1.4이상 2.2미만	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	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
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	1.4미만	5백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	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

□ **(개정안)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**의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과 **동일하게 부과기준금액의 구간을 상향조정**하였다.

< 정액과징금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금액 (개정안) >

중대성의 정도	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	부과기준금액
매우 중대한 위반행위	2.2이상	**4억 원 이상** 5억 원 이하
중대한 위반행위	1.4이상 2.2미만	**2억 원 이상** 4억 원 미만
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	1.4미만	5백만 원 이상 **2억 원 미만**

나.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50% 감액 사유 합리화

□ **(현황)** 법위반 사업자의 **자본잠식율이 50%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과징금을 50% 초과하여 감액**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○ 이로 인해 법위반 사업자의 **과징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자본잠식율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게 되는 한계**가 있다.

< 관련 규정 : 고시 Ⅳ.3.가.(2)(가) (현행) >

◇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50%를 초과하여 감액
① *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%이상*
②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+ 50% 초과감경 없이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
ⅰ.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400% 초과 또는 200%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
ⅱ.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
ⅲ.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

□ **(개정안)** 자본잠식율이 50%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액의 50%를 초과 감액하지 않을 경우 **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**하였다.

< 관련 규정 : 고시 Ⅳ.3.가.(2)(가) (개정안) >

◇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50%를 초과하여 감액
①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%이상 + 50% 초과감경 없이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

9AB9A349B384429AAA1C5CFF26B21D92

다.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'위반금액' 정의 정비

□ **(개정배경) 대규모유통업법 개정**으로 **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이 신설***됨에 따라 **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****도 **신설할 필요**가 있다.

* 직매입거래 시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(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, '21.10.21.시행)

** 현행 '위반금액'의 정의에는 위수탁 및 특약매입 거래 시 상품판매대금의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

□ **(개정안)**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* 시 고려되는 **'위반금액'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**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다.

*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시 과징금 산정 산식

= 관련납품대금 × (위반금액/관련납품대금) × 부과기준율

<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'위반금액'의 정의 (현행·개정안) >

현 행	개 정 안
Ⅱ. 1. 위반금액 나. 법 제8조【상품판매대금의 지급】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금액,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·물품으로 지급한 금액	Ⅱ. 1. 위반금액 나. 법 제8조【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】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, 지연이자 미지급금액, 같은 조 제4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·물품으로 지급한 금액

라. 부칙

□ **(시행일) '22.1.1.부터 시행**할 **예정**이다.

□ **(적용례)** 법 위반행위 종료시점을 불문하고 **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하여** 모두 개정 과징금 고시를 **적용*할 예정**이다.

* 위반행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고시를 달리할 경우 고시적용기준이 매번 다르고 복잡하다는 점,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도 심의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행 중 임('16.12월)

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

□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**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형평성**이 **확보**되고 **과징금 감액사유**가 **합리화**됨에 따라 **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**되는 등 **과징금 고시 운영상의 미비점**이 **개선**될 것으로 기대한다.

□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, 관계 부처 등의 **의견을 충분히 수렴**한 후 **위원회 의결** 등을 거쳐 **개정안**을 **확정·시행할 계획**이다.

※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.
(http://www.ftc.go.kr → 정책/제도 → 입법/행정예고)

※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

▶ 이 지침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1월 3일까지 ①제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②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(찬성 · 반대 · 수정 의견과 그 이유)을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우편: (30107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, 4층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
* 팩스: 044-868-3822

공정거래위원회

9AB9A349B384429AAA1C5CFF26B21D92

< 붙임 > 「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www.ftc.go.kr

OPEN

9AB9A349B384429AAA1C5CFF26B21D92

붙임 **「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**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Ⅱ. 정의
1. ~ 10. (생략)
11. 위반금액
“위반금액”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.
가. (생략)
나. 법 제8조【상품판매대금의 지급】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금액,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·물품으로 지급한 금액</td><td>Ⅱ. 정의
1. ~ 10. (생략)
11. 위반금액
“위반금액”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.
가. (생략)
나. 법 제8조【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】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, 지연이자 미지급금액, 같은 조 제4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·물품으로 지급한 금액</td></tr>
<tr><td>Ⅳ. 1. 산정기준
다. (정액과징금 산정기준)
<table><tr><th>중대성의 정도</th><th>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</th><th>부과 기준금액</th></tr><tr><td>매우 중대한 위반행위</td><td>2.2이상</td><td>3억원 이상 5억원 이하</td></tr><tr><td>중대한 위반행위</td><td>1.4이상 2.2미만</td><td>1억원 이상 3억원 미만</td></tr><tr><td>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</td><td>1.4미만</td><td>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</td></tr></table></td><td>Ⅳ. 1. 산정기준
다. (정액과징금 산정기준)
<table><tr><th>중대성의 정도</th><th>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</th><th>부과 기준금액</th></tr><tr><td>매우 중대한 위반행위</td><td>2.2이상</td><td>4억원 이상 5억원 이하</td></tr><tr><td>중대한 위반행위</td><td>1.4이상 2.2미만</td><td>2억원 이상 4억원 미만</td></tr><tr><td>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</td><td>1.4미만</td><td>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Ⅳ. 과징금의 산정
3. 부과과징금의 결정
가. (생략)
(1) (생략)
(2)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, … (후략).
(가)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%이상인지 여부, 또는</td><td>Ⅳ. 과징금의 산정
3. 부과과징금의 결정
가. (생략)
(1) (생략)
(2) ----------

----------.
(가)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%이상인지 여부, 또는</td></tr>
</table>

9AB9A349B384429AAA1C5CFF26B21D92

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. 1)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400%를 초과하거나 200%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)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)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	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 적용한다. 다만, 위의 두 경우 모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. 1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2) ---------- ----------. 3) ---------- ----------.

공정거래위원회
9AB9A349B384429AAA1C5CFF26B21D92